성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
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「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」이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으로 법제명 변경 및 전면개정시행(대통령령 제18677호, 2005.1.14. 공포)됨에 따라

○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부동산(토지・건물)가격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・심의하고,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・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법제명 변경

- 「성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」를「성주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함.

나. 토지에 대해서만 평가하던 것을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도 평가함(안 제4조)

다.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사항을 성주군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심의 함(안 제4조)

5. 검토의견

□ 본 개정 조례안은

○ 상위법인 「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이 「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

○ 「성주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「성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

○ 종전에는 「토지에 대해서만 평가하던 것」을 「개별주택가격 결정」에 관한 사항도 평가・심의토록 하는 등

○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반영한 것입니다.

□ 결론적으로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신·구 조문 대비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**「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」의 제반규정에 적합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**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